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비용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8. 7.22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 및 회부일자

- 제안 : 1998년 7월 14일 제출
- 회부 : 1998년 7월 14일

3.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이 동법 제14조제4항으로 개정되었으며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규정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으로 함 (안 제1조)
-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 (안 제3조)

5.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라 본 조례상의 근거규정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개정(98.2)후 조례개정(98.7)의 자연사유와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